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0가합3203 판결 [채권양도, 양수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등]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시진국, 이재상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게이트

담당변호사 김범석, 정덕

변론 종결 2021. 10. 7.

판결 선고 2021. 11. 18.

주 문

1. 가.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0. 4. 14.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대한민국(소관: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위 가항 기재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 1) C 주식회사(이하 모든 주식회사인 법인의 명칭을 기재할 때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는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2) D는 2000. 6.경부터 C를 비롯한 E, F, G, H, I 등(이하 'C 등 법인들'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오피스텔 신축, 분양 등의 사업을 하였다(이하 D와 D가 운영하는 C 등 법인들을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D 측'이라 한다).
- 3) 원고는 법무사로서 D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투자 내지 대여하였고, 피고는 법무법인 J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의 형사소송 및 D측과 원고 간의 민사소송에서 D 측을 대리하였다.

나. 원고와 D 측 사이의 금전거래 관계

- 1) D는 2010. 11. 15. 원고에게 그동안의 채무액을 확인하는 취지로 '2010. 11. 15.까지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12억 8,000만 원이고,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월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 2) 한편 D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중 하나인 E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게 하고자, E가 2012. 3. 15. 원고와 사이에, D가 원고에게 변제하지 못한 20억 2,000만 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하게 하였다.
- 3) 원고가 2012.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E 은행계좌에 대하여 청구금액 15억 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자 E는 2013.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3년 금제5603호로 15억 원을 공탁하면서 피공탁자를 G 또는 원고로 하는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을 하였다(이하 E가 공탁한 위 15억 원의 공탁금을 'E의 공탁금'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G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7719호)을 받고, D가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어, 2013. 5. 16. 원고가 유일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자로 확정되었다(갑 제3호증).

다. 원고와 D 측 사이의 합의 체결

1) 원고는 2013. 5. 29. D 측 및 D의 오빠인 K와 그때까지 발생한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기 위하여 원고가 유일한 공탁금출급권자로 지정된 E의 공탁금 15억 원을 G 명의로 회수하되, 그중 10억 원을 원고가 D 측에게 투자하는 것으로 정하고, 다만 D 측과 K는 위 10억 원의 일부라도 지출할 때에는 원고의 동의를 받기로 하는 등의 합의(을 제25호증)를 하였다(이하 '제1차 합의'라 하고, 원고가 D 측에게 투자하기로 하는 10억 원을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

제1차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합의사항

(‘갑’은 ‘D 측 및 K’를, ‘을’은 ‘원고’를 각각 의미한다)

1. 갑, 을 간의 2011. 11. 7.자 약정서에 의한 L1) 에 대한 3억 5,000만 원에 대한 채권·채무관계는 을이 갑에게 근저당이전 등 양도함.
2. 2010. 12. 23.자 약정서에 의하여 F가 M한테 받을 환매대금 중 일부금을 을에게 채권 양도하였으나, 갑에게 다시 양도한다.
3. N와의 소송금액은 갑에게 금일 양도함.
4. E가 공탁한 15억 원은 G 명의로 회수하되, 갑이 5억 원, 을이 10억 원으로 배당하되, 다만 을은 이 금액을 갑 회사가 시행자로 한 회사의 투자금으로 하되, 단 1원이라도 지출 시는 을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투자내역은 수익금의 5:5 지분조건을 원칙으로 하고(단, 변경 가능) 나머지는 추후 정함
만일 갑이 을의 동의 없이 임의사용 시는 민·형사상 책임을 짐
투자처는 갑, 을 간 서로 상의 결정한다.
5. 본 합의서 날인 이전 갑과 관련된 그동안 거래한 회사들의 채권, 채무 관계는 모두 정산 완료된 것으로 한다.

본 합의사항은 금일 이전 또는 이후 작성되는 합의서에 우선함.

6. 을에 대한 10억 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을의 투자금이 출연된 회사가 일체 책임을 진다.

7. 본 합의서는 이전 이후 어떠한 합의서에 우선하며 일체의 영향을 주지 않음

2) 원고는 2013. 5. 29. 'G이 E가 공탁한 공탁금을 출급청구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승낙서를 G에 교부하였고(갑 제4호증의 3), G은 위 승낙서를 첨부한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를 공탁법원에 제출하여(갑 제4호증의 2), 그 무렵 위 공탁금 15억 원을 수령하였다.

3) 원고는 2013. 11. 18. D, G, E, F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기존 제1차 합의에서 정한 이 사건 투자금 10억 원에다가 M 채권 회수금과 ○ 채권 회수금을 추가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을 제1호증)를 하였다(이하 '제2차 합의'라 한다).

합의약정서

('갑'은 'G, E, F, D'를, '을'은 '원고'를 각각 의미한다)

갑과 을은 기존에 체결한 합의서(2013. 5. 29.자. 이는 제1차 합의를 의미하므로 이하 '제1차 합의'라 한다) 내용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 아 래 -

1. 제1차 합의상 을이 M에 대한 양수금을 갑한테 양도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로 하고, 을이 M로부터 받을 금액을 전부 수령한다.

2. 제1차 합의상 을의 투자금 10억 원과 위 1항의 금원을 합하여 을이 투자를 하되 금융권에서 요구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위 1, 2항의 금액을 자본금으로 투자하며,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는 D와 을(또는 을이 지정한 자)이 취임한다.

3. 을의 위 투자금은 2014. 12. 31.까지 사업지가 확정되지 못할 시(위 법인이 설립되었음에도) 갑은 을의 위 투자금을 2014. 12. 31.까지 반환한다.

4. 을은 0으로부터 회수된 채권을 즉시 위 1, 2항에 따른 투자를 하며, 만일 0으로부터 채권 회수를 못 하고 'P'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위 갑 측에

① 320억 원을 기준금액(전액을 을에게 지급)으로 분양대행권

② 또는 건물관리권(임차권 포함)을 을이 갑에게 양도한다.

5. 을이 투자한 금원은 금융권에서 요구하여 만들어진 법인에 투자하되 원금 회수 기간은 투자된

시행사업에 분양률이 80% 이상 목표달성 시 회수되도록 갑은 책임 있게 최선(은행과 약정 시에도 필히 이 사항을 명기해야)을 다하도록 한다.

6. 을은 위 사항을 어길 시 갑에게 투자된 10억 원과 갑으로부터 포기 받은 M 양수금채권 금원을 포함하여 갑에게 위약금으로 몰수하기로 하며, 갑이 위약 시민·형사 등 모든 책임을 진다.

7. 만일 갑 측의 책임으로 세금 관계 등 위 투자사업에 차질을 빚고 을의 투자금 및 배당금이 손실을 입을 시에는 갑은 을에게 그 배액을 손해배상해야 한다.

라. D의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원고는 제1차 합의 제4항의 E의 공탁금과 관련하여 'D는 E의 공탁금 15억 원을 수령하더라도 부동산 관련 사업에 투자하여 원고에게 그 수익을 분배할 의사가 없었고,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그 전액을 임의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G 명의로 공탁금 15억 원을 수령하여 그중 10억 원(이 사건 투자금을 의미한다)을 원고 몫으로 배당하되, 이를 D의 부동산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그 10억 원은 원고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사용하고, 수익은 절반씩 분배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탁금 15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위반(사기)의 혐의사실 등으로 D를 고소하였고, 이에 2018. 3. 2. 위 죄명 등으로 D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11. 29. D의 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2018고합214, 470(병합)호].

2) 이에 검사와 피고인인 D가 모두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심에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의 점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그 편취금액을 '1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예비적으로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죄로 추가 기소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은 2019. 8. 29. 판결로 위와 같이 변경된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D가 위 공탁금 15억 원 중 이 사건 투자금 10억 원을 부동산 관련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보관하던 중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30.부터 2013. 11. 18.까지 회사운영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여, D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다(2018노3482호, 갑 제6호증).

4) 이에 D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11. 14. D의 상고를 기각하였고(2019도13230호),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갑 제7호증).

바. D 측과 K의 원고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

1) D 측과 K는 2018. 1. 3. 원고를 상대로 '원고는 D 측에게 제2차 합의 제4항의 이 사건 투자금 10억 원, M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의 변제금(우선수익금), 그리고 0으로부터 회수할 채권을 투자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제2차 합의 제6항에 의하여 이 사건 투자금 10억 원과 원고가 양수한 M에 대한 우선수익금 채권은 위약금으로서 D 측에게 몰수되어야 하므로, D 측과 K의 원고에 대한 제1, 2차 합의에 기한 이 사건 투자금 10억 원의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8가합500381호로 채무부존재확인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2. 13. H, C, I, K의 청구에 대하여는 '위 H 등은 제2차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제2차 합의 제6항의 위약금 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 투자금 10억 원의 반환의무가 없음을 구할 권원이 없다.'는 이유로, G, E, F, D의 청구에 대하여는 '원고가 제2차 합의 제4항에 따른 투자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제2차 합의 제6항의 위약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D 측과 K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 소'라 한다).

2) 이에 G, E, F, D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9나2013726호, C, H, I, K는 항소하였다가 위 소를 취하하였다) 및 상고(대법원 2019다275281호)하였으나, 위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20. 1. 1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갑 제8호증).

사. Q의 이 사건 공탁 등

1) C는 Q으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686,111,062원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었는데, Q은 2018.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8년 금제11808호로 686,111,062원을 공탁하면서 피공탁자를 C 또는 R로 하는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갑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하고, 위 공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S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2) R이 2020. 2.경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포기하여(을 제8호증의 2) C는 이 사건 공탁금의 유일한 공탁금출급청구권자가 되었다.

3) 법무법인 T는 2020. 3. 13.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 청구금액 56,339,828원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20카단803760호로 C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이하 'T의 이 사건 채권에 대한 가압류'라 한다). 한편, E는 2020. 4. 1.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 청구금액 7억 원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20타채2273호로 C의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20. 4. 6.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아. 원고와 E, D 간의 추가 합의 체결 및 C와 피고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경위

1) 구미시는 2020. 4. 8. U와 사이에 V 민간공원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공원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예치금을 310억 원으로 정하고, U에게 다음날인 2020. 4. 9.까지 위 예치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U가 위 예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자, 2020. 4. 14. W에게 2020. 4. 17.까지 예치금을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다(을 제3호증의 3). 이후 U는 이 사건 사업의 민간공원추진자의 지위를 X에게 승계하기로 합의하였다(U와 X는 모두 Y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다).

2) Y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예치금 310억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선이자 등 명목으로 20억 원이 필요하자 D와 사이에, D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투자금으로 20억 원을 지급받고, 그 대가로 D에게 이 사건 사업 시행사의 지분 51%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D는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할 20억 원을 마련하고자 C, E가 2020. 4.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담보 명목으로 양도하고, C, E를 채무자로, D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투자금으로 5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차용 및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을 제1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약정'이라 한다). 이에 C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E도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2).

C와 E는 2020. 4. 14.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E의 채권양도

통지는 2020. 4. 16., C의 채권양도 통지는 2020. 4. 21. 각각 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갑 제11, 12호증)].

3) E, C는 2020. 4. 16. D가 2020. 2.경 새로 설립한 Z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여 및 투자약정서(이하 '이 사건 대여 및 투자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을 제10호증).

('갑'은 'E, C'를, '을'은 'Z'을 각각 의미한다)

1. 갑은 2013. 5. 29., 2013. 11. 18.자 원고와의 합의서 및 원고가 제기한 투자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10억 원의 반환채권 청구를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다.

2. 을은 원고에게서 투자받은 10억 원 관리와 원고로부터 추가 투자를 받기 위해 2020. 2. 11.자 설립된 부동산개발시행 회사이다.

3. 2020. 4. 16.자로 을은 이 사건 사업 공동주택부분 지분 51% 사업권을 원고와 합의하여 함께 인수하기로 했다.

4. 갑은 을이 인수하기로 한 이 사건 사업 공동주택부분 지분 51% 사업권 양도·양수 대금으로 이 사건 투자금 10억 원을 사용하기로 한다.

5. 갑은 을에 대한 대여 및 투자금으로 이 사건 공탁금 및 AA, AB에 대한 채권을 전액 대여 및 투자하기로 한다.

을과 D가 필요시 위 공탁금 및 채권을 이 사건 사업 공동주택부분 51% 인수를 위해 수령하거나 처분하는데 갑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6. 을은 이 사건 사업 공동주택부분 51% 사업권 인수 후 갑에게 사업정산시 갑의 대여 및 투자금에 대한 배액을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7. 원고의 이 사건 투자금 10억 원에 대한 반환책임은 전적으로 을이 지며, 을이 책임지고 해결하기로 한다.

8. 을은 원고와 책임 있는 합의를 하여 갑에게 10억 원 반환청구의 소를 취하하기로 한다.

9. 위 갑과 을의 조건들은 을이 이 사건 사업 공동주택부분 지분 51% 사업권 인수에 최초 사업권 양도양수 2020. 4. 20.자 대금 지급이 완료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기로 한다.

10. 갑과 을은 위 내용들이 원고와 합의가 완료되었기에 진행하기로 한다.

4) 피고는 2020. 4. 17. 이 사건 차용약정에 따라 4억 8,000만 원을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던 X 측에

직접 지급하였고(을 제7호증의 1, 을 제37호증), E는 같은 날 X에 2억 원을 지급하였다(을 제7호증의 2).

5) 원고는 아래 '자'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D 측 등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청구의 소'가 진행 중이던 2020. 4. 20. E, D와 기존의 법률관계를 다시 정리하고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제3차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을 제6호증의 1).

약정서

'갑'은 'E, D'를, '을'은 '원고'를 각각 의미한다.

1. 별첨 약정서3) 에 의하여 을이 20억 원을 투자한바, 10억 원은 2013. 5. 29.자에 을이 갑 등과의 합의서에 의하여 투자한 투자금이며, 10억 원은 을이 별첨 약정서상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이다.

2. 갑은 위 20억 원에 대한 담보로서 E 소유인 별지 상가4) 를 을한테 즉시(2020. 4. 20.) 이전등기해 준다.

가. 이 등기부상 AC 가압류는 현재 본안 소송 중인바 필히 전부 승소하여 가압류를 말소해준다(만일이라도 AC한테 일부금이라도 지급하는 판결, 조정 등이 되면 갑은 다른 돈으로 지급해서 해결하며 이 부동산 가치에 손실을 주면 을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나. 이 등기부상 가등기관자 AD은 AE이 아는 회계사로서 위 을의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탈키 위하여(아무런 매매예약금, 매매계약서 및 대금 지급도 없는데 갑 모르게 임의로, 허위로) 가등기를 해둔 것이며, 따라서 갑이 이 가등기를 말소함에 적극 협력을 다 한다. 비협력으로 이 말소가 곤란 시 갑이 민·형사 등 책임진다.

3. 차후 을이 위 20억 원을 모두 회수시 을 명의 이전등기를 해제하여 준다(별첨 약정서 제4항에 의하여도 전액 회수 못할 시 을 소유로 계속 인정되며, 을이 임의 처분 설정 등을 해도 갑은 일체 이의 못 한다).

4. 별첨 약정서 제2항에 의하여 위 갑이 AF5) 에 지급할 10억 7,000만 원 중 위 을이 금일 389,542,690원을 대납해 주는바 위 갑은 별첨 사업상 을이 투자할 마지막 시점까지 이 돈을 갚지 못하면 을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소유권반환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주장 및 일체 이의

없고 을이 처분 설정 등 해도 일체 이의 못함.

6. 갑과 을과의 지금껏 제기한 형사·민사분쟁 사건을 모두 취하하며 이에 따르는 서류 일체를 필요시 상대방에 교부해준다.

9. 갑, 을은 기존 문제에 대하여 다시 거론 또는 일체 법적 제기하지 않는다.

11. 다만 본 계약이 무효, 취소되면 상호 간 기존 민·형사 문제에 다시 법적 제기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이를 감수하며 일체 이의 없다.

6) 원고는 제3차 합의를 체결한 날인 2020. 4. 20. X, Y, U(위 두 법인과 Y를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하 'Y 측'이라 한다), Z 및 D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제3차 합의의 별첨 약정서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제6호증의 2)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 관련 투자약정'이라 한다).

약정서

'갑'은 'Y 측'을, '을1'은 'Z'을, '을2'는 'D'를, '병'은 '원고'를, '정'은 'AF'을 각각 의미한다.

2. 투자금

가. 병은 이 사건 사업상 정이 대출해주는 ① 구미시에 대한 공사예치금(310억원)에 대한 선이자 및 ② 정 회사 수수료 1% 등 비용에 대한 약 10억 7,000만원 등에 10억 원(단, 이 돈은 2013. 5. 29.자 을 등과의 합의서에 의하여) 병이 을1. D 등한테 투자금으로 보관한 돈을 투자하는 것이며,

나. 병은 나머지 10억 원을 2020. 4.경 5억 원, 2020. 5. 초경 5억 원(즉, 이 사건 사업상 꼭 필요한 시점에)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다.

4. 병의 위 투자금 회수 시기

이 사건 사업상 정이 토지 대금, 인·허가 등 비용에 대한 본 PF(약 500억 원) 나오는 즉시(즉, 사업소득 발생시가 아님) 갑, 을은 연대하여 병의 투자금 20억 원을 변제한다(만일 갑, 을이 위 사항을 위반시 형사책임을 지며 민사상 20억 원의 배액을 연대하여 배상해주며, 이에 대하여 일체 이의제기 못 한다).

7) 원고는 제3차 합의 체결일인 2020. 4. 20. 제3차 합의에 따라 AF에 341,000,000원을, X 측에 48,542,69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을 제12호증).

8) Z은 제3차 합의 및 이 사건 사업 관련 투자약정이 체결된 날인 2020. 4. 20. X와 사이에, Z이

X에게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투자하고, X로부터 X의 주식 51%를 양도받으며, X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도록 하는 내용의 '구성사업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사업 양도·양수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을 제5호증).

9) 구미시는 2020. 4. 21. 이 사건 사업의 민간공원추진자를 U에서 X로 승계 변경하는 것을 승인하고(을 제3호증의 4), 2020. 4. 22. X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는 고시를 하였다(을 제4호증). 이에 X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AK를 선정하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공사자금관리를 AL에 위탁하였다.

10) Z은 X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금 반환 등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사업의 자금관리를 수탁받은 AL으로부터 2020. 12. 11. 12억 7,000만 원, 2021. 2. 19. 7억 3,000만 원 합계 20억 원을 지급받았다(갑 제26호증).

자. 원고의 D 측, K 및 AM에 대한 투자금 반환 청구의 소

1) 원고는 2020. 3. 2. D 측, K 및 AM를 상대로 'D 측 및 K는 제1차 합의에 따라 원고의 사전 동의하에 이 사건 투자금 10억 원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투자금을 사용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 또는 횡령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AM는 D와 공동불법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투자금 10억 원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투자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D 측 등은 원고의 소 제기는 제3차 합의상의 소취하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본안전항변을 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 12. 16. D 측 등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제3차 합의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보면, 제3차 합의는 D 측이 2020. 4. 20.까지 담보로 제공될 E 소유의 제3차 합의상 담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것을 전제로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E의 법률상 문제로 인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여 D 측의 원고에 대한 담보 제공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면서 D 측 등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다.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D 측과 K는 제1차 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투자금 10억 원을 사용함에 있어 원고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그 동의 없이 사용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D 측과 K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한편, AM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D 측과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AM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20가합884호, 갑 제17호증, 이하 '이 사건 투자금 청구의 소'라 한다).

3) 이에 대하여 D 측과 K가 항소하여, 이 사건 투자금 청구의 소는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1나2006455호).

차. C의 자산 상황

C는 2017. 4. 5. 폐업하였는데,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C의 유일한 자산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내지 13, 15, 17, 18,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내지 9, 12, 13, 25,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D 측은 제1차 합의에 따라 원고의 사전 동의하에 이 사건 투자금 10억 원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 투자금을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는 제1차 합의의 당사자인 C에 채무불이행 또는 횡령의 불법행위에 기한 이 사건 투자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2) 피고

제1차 합의 제6항이 "원고에 대한 10억 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원고의 투자금이 출연된 회사가 일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원고는 자신의 투자금이 출연된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채권을 가질 뿐이므로 C에 대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 C는 원고와 채권·채무 관계를 모두 정산하기 위하여 제1차 합의의 당사자가 되었을 뿐이어서 제2차 합의 당사자에서는 빠진 것이므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을 제2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제1차 합의 문언 내용, 체결 경위,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D는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기 위하여 C 등 법인들 및 K 모두를 당사자로 하는 제1차 합의를 체결하면서 G 내지 D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투자금을 사용하여 제1차 합의를 위반할 경우, G 내지 D뿐만 아니라 C를 포함한 제1차 합의 당사자들 모두가 원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G 내지 D가 제1차 합의를 위반함에 따라 제1차 합의 당사자인 C에 대해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다.

(1) C가 제1차 합의의 당사자임은 문언상 명백한데, 제1차 합의 제4항에서 원고의 이 사건 투자금 10억 원을 G가 지급받기로 특정하면서도, "갑이 을의 동의 없이 위 투자금을 임의사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짐"이라고 기재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주체를 G 내지 D로 특정하지 않고 D측 및 K 모두를 지칭하는 "갑"으로만 기재하였다.

(2) 원고와 D, G, E, F, AN가 2013. 5. 20. E의 공탁금 15억 원을 E가 회수하되, 그중 10억 원을 원고가 D가 지정한 회사에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가(을 제24호증), 합의 당사자에서 AN를 제외하고 D가 운영하는 C, H, I, K를 추가하여 2013. 5. 29. 제1차 합의를 다시 체결하였다.

(3) C를 포함한 제1차 합의 당사자들 전부는 2018. 1. 3.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 소를 제기하면서 '제2차 합의 제6항에 의하여 이 사건 투자금은 D 측에게 몰수되어야 하므로, D 측 및 K의 원고에 대한 제1, 2차 합의에 기한 이 사건 투자금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을 뿐, 제1차 합의의 당사자 중 G를 제외한 나머지 법인들 및 K가 제1차 합의의 실질적 당사자가 아니라거나 원고에 대한 투자금 10억 원의 반환채무는 G 내지 D만 부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4) 제1차 합의에는 '원고에 대한 10억 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원고의 투자금이 출연된 회사가 일체 책임을 진다.'고 기재되어 있고(제6항), D가 2020. 2.경 Z을 설립하였으나, ① D는 이 사건 투자금 10억 원을 부동산 관련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보관하던 중 원고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30.부터 2013. 11. 18.까지 회사운영비 등 개인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점, ② D가 Z을 설립한 시기는 제1차 합의가 이루어진 2013. 5. 29.로부터 6년 이상 경과한 이후인 점, ③ D가

실제로 이 사건 투자금 10억 원을 Z에 출연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Z이 제1차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투자금이 출연된 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설령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D 측과 제2차 합의 내지 제3차 합의를 체결하여 기존의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함으로써,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소멸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D와 G, E 및 F와 제2차 합의 내지 E, D와 제3차 합의를 각각 체결함으로써,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C는 제2, 3차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고, 제1차 합의에는 "본 합의사항은 금일 이전 또는 이후 작성되는 합의서에 우선함(제5항)", "본 합의서는 이전, 이후 어떠한 합의서에 우선하며 일체 영향을 주지 않음(제7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제1차 합의에서 발생하는 원고의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그 이후 합의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2) D는 2013. 5. 30.부터 2013. 11. 18.까지 이 사건 투자금 10억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고, 제2차 합의는 2013. 11. 18. 체결되었는데, D의 위 횡령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은 그로부터 4년 이상 경과한 후인 2018. 3. 2.에서야 공소가 제기되었는바, 원고가 제2차 합의 당시 D의 횡령으로 인하여 C를 비롯한 D 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제3차 합의에 제1차 합의를 무효화 한다거나 제3차 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C의 원고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여 준다는 등의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아가 이미 D의 횡령행위를 경험했던 원고가 제3차 합의를 체결하면서 아무런 기재나 조건 없이 제3차 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C 등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거나 C의 채무를 면제하여 줄 의사였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4) C 및 실질적 운영자인 D는 제3차 합의가 체결된 이후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투자금 청구의

소에서 제3차 합의상의 소취하합의에 반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본안전항변을 하였을 뿐, 원고의 D 측에 대한 투자금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제2, 3차 합의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는 이 사건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 및 채무자의 무자력

1) 청구원인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일인 2020. 4. 14. 당시 686,111,062원 상당의 이 사건 채권이 유일한 재산이었던 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투자금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무 및 법무법인 T에 대한 56,339,828원 상당의 채무 등이 있었으므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C가 그와 같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채권을 담보 명목으로 양도함으로써 다른 일반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공동담보 부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원고가 제3차 합의 및 이 사건 사업 관련 투자약정서에 따라 투자금 10억 원을 제대로 투자하였다면, Z은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투자금을 상회하는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었고, 그렇다면 D 측의 원고에 대한 채무 변제와 C의 채무변제력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C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C의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그런데 원고가 투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결과, Z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Z이 이 사건 사업을 통하여 상당한 이익을 거두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법리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신탁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 내지 신탁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참조). 이는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채권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다4730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C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부득이 피고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담보 명목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사로 선정된 X와 투자약정을 체결한 주체는 Z이고, C는 Z에 이 사건 채권 등을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에 간접적으로 투자한 것에 불과하고, C가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수익금을 정산받기 위해서는 1차로 이 사건 사업시행사가 Z에 수익금을 정산하고, 2차로 Z이 C에 수익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C 및 Z 모두 D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이므로, C가 이 사건 사업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 그다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사업이 성공하여 큰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수익금을 지급받는 것은 직접투자자인 Z이고, 이 사건 대여 및 투자약정서에는 C가 이 사건 사업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Z으로부터 대여금의 배액만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며, 이 사건 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 C가 Z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지 않는다(이 사건 대여 및 투자약정서 제6항).

(3) 이 사건 대여 및 투자약정서에는 변제일이 '이 사건 사업 정산시'라는 불확정기한으로 되어 있으며, 이자에 관한 기재도 존재하지 않으며, C는 Z에게 이 사건 채권을 투자한 후 Z으로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정산을 받은 바가 없고, 오히려 Z은 이 사건 사업을 통해 X 측으로부터 20억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C에 변제한 바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4) C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미 폐업을 한 상태였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전후로 별다른 영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C가

채무변제력을 가지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C와 Z은 모두 D가 운영하는 법인인 점, C가 채무초과상태에서 Z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채권을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인 점을 종합하면, C의 사해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아직 그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⁶⁾ (원고의 사해행위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한정석

판사김현희

판사강석규

별지

1)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L는 이후 상호를 N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2) 2021. 4. 27.자 피고 준비서면 제16면 참조

3)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X, Y, U, Z 및 D와 사이에 V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투자약정서를 의미한다.

4) E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은평구 AG건물 AH호, AI호(이하 '제3차 합의상 담보 부동산'이라 한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의 2021. 4. 27.자 준비서면 제14면, 을 제27호증).

5) 'AJ'이라는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6)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AO 배당절차가 개시되었으나(갑 제15호증), 이는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C의 채권자들인 법무법인 T가 가압류를, E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각각 받은 뒤 그 채권에 대한 배당절차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C가 위 공탁금(배당금)의 출급청구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의 결론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